

제266회(정례회) 제2차본회의
2007년 12월 14일 (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2. 14.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1월 12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12.3)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1. 제안이유

- 부서별 업무기능 확대·조정 및 소방관서 신설 등 신규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 2,649명 → 2,687명(증 38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77명 → 1,496명(증 19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058명 → 1,077명(증 19명)

나. 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16명 : 5급 증4, 6급 증9, 7급 증3
- 연구직 2명 : 연구사 증2
 - ※ 연구직 정원 중 1명은 산림환경연구소 한시정원
- 소방직 19명 : 소방경 증1, 소방위 증5, 소방장 증3,
소방교 증6, 소방사 증4
- 기능직 1명 : 8급 감1, 10급 증2

다. 한시직급정원 조정 : 2명

- 사업소 2명(3급 1, 4급 1) → 본청 2명(생명산업본부)
 - ※ 생명산업추진단 폐지, 본청 기구 설치에 따른 조정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개정조례안은 부서별 업무기능 확대·조정 및 소방관서 신설 등 신규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원을 38명 증원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재 2,649명으로 이번에 38명을 증원하면 총정원은 2,687명이 되며, 증원내역은 일반직 16명·연구직 2명·소방직 19명·기능직 2명임.

이번에 증원되는 38명은 도정홍보역량 강화에 따른 인력보강, 서울사무소 운영, FTA 대책, 기초노령연금업무 추진 등 업무기능 확대, 신규행정수요 발생, 소방관서 신설 등에 따른 해당사업의 원활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증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 중 “2,649명”을 “2,687명”으로, 동조 제1호중 “1,477명”을 “1,496명”으로, 동조 제2호중 “1,058명”을 “1,077명”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직급정원) 본청의 정원 4급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4급1명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3급 1명·4급 1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종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정원		2,687	1,038	70	1,317	262
정무직(도지사)		1	1			
일반직	소계	1,101	857	44	68	132
	2-3급	1		1		
	3급	9	8		1	
	3-4급	1	1			
	4급	60	42	7	5	6
	5급	221	180	10	15	16
	6급	374	298	14	19	43
	7급	377	287	12	24	54
	8급	57	40		4	13
	9급	1	1			
별정직	소계	22	13	3	5	1
	1급	1	1			
	5급	4	3	1		
	6급	11	4	1	5	1
	7급	3	3			
	8급	2	1	1		
연구직	소계	142	2		110	30
	연구관	21			18	3
	연구사	121	2		92	27
지도직	소계	25			25	
	지도관	6			6	
	지도사	19			19	
소방직	소계	1,077	69		1,008	
	소방정	10	2		8	
	소방령	29	10		19	
	소방경	59	5		54	
	소방위	73	10		63	
	소방장	148	12		136	
	소방교	333	26		307	
	소방사	425	4		421	
교원	소계	44			44	
	학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2			32	
	조교	11			11	
기능직	소계	275	96	23	57	99
	6급	11	8	1	1	1
	7급	30	10	4	4	12
	8급	51	16	1	4	30
	9급	87	24	7	30	26
	10급	96	38	10	18	30

[별표 2]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합 계	31	일반직 : 4급1, 5급6, 6급9, 7급7, 8급6 기능직 : 10급1 연구직 : 연구사1		
본 청	4	일반직 : 5급2, 6급1, 7급1	2008. 6. 30.	혁신지원 및 고객만족업무
	2	일반직 : 6급1, 7급1	2007. 12. 31.	사업별예산업무
	4	일반직 : 5급1, 6급2, 7급1	2008. 12. 31.	역사규명업무
	1	일반직 : 6급1	2008. 12. 31.	과거사 업무
	3	일반직 : 7급1, 8급1 기능직 : 10급1	2008. 12. 31.	복식부기업무
	1	일반직 : 7급1	2008. 12. 31.	동학관련업무
	15	일반직 : 4급1, 5급3, 6급4, 7급2, 8급5	2008. 10. 30.	혁신·기업도시관련 업무
사 업 소	1	연구직 : 연구사1	2008. 12. 31.	소나무재선충 검사 업무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649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77명</u></p> <p>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1,058명</u></p> <p>3.~4.(생략)</p> <p>제3조~제5조(생략)</p>	<p>제1조(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원의 총수)----- -----<u>2,687명</u>----- -----</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96명</u></p> <p>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1,077명</u></p> <p>3.~4.(현행과 같음)</p> <p>제3조~제5조(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한시정원)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 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④ <삭제>

⑤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

⑥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1조(정원의 규정)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생략)

비 용 소 요 추 계 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의 총수 : 2,649명 ⇒ 2,687(증38명)

- 일반직(+16) : 5급 +4, 6급 +9, 7급 +3
- 연구직(+2) : 연구사 +2
- 소방직(+19) : 소방경+1, 소방위+5, 소방장 +3, 소방교+6, 소방사+4
- 기능직(+1) : 8급△1, 10급+2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1,528,599	
○ 인건비	1,251,468	
- 기본급	680,611	※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 일반직 - 5급(4명) : 18호봉 기준 - 6급(9명) : 15호봉 기준 - 7급(3명) : 15호봉 기준 ○ 연구직 - 연구사(2명) : 16호봉 기준 ○ 소방직 - 소방경(1명) : 18호봉 기준 - 소방위(5명) : 17호봉 기준 - 소방장(3명) : 15호봉 기준 - 소방교(6명) : 12호봉 기준 - 소방사(4명) : 10호봉 기준 ○ 기능직 - 8급(1명) : 12호봉 - 10급(2명) : 9급 10호봉 기준
- 수 당	250,846	
- 정액급식비	48,360	
- 교통보조비	47,760	
- 명절휴가비	69,412	
- 가계지원비	115,919	
- 연가보상비	38,560	
- 기타직보수		
- 일용인부임		
○ 물건비	101,58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54,42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7,160	
○ 이전경비	175,551	
- 성과상여금	23,135	
- 연금부담금	122,249	
- 국민건강보험금	30,167	
- 연금지급금	-	